상월곡역 장위아트포레 도시형생활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 한국부동산원 청약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 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38-18 일원에 공급되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성북구는 비투기지역, 비투기과열지구, 비청약과열지역이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도시형생활주택)으로서 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2024.12.18.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사업주체 대표전화(02-966-0988) 또는 사업주체 홈페이지(https://장위아트포레.com)를 통해 분양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를 진행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6.05.이며,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12. 27.입니다.
- 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도시정비신속추진단-7534(2024.09.12)로 입주자모집변경공고 승인]
- 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주택에 관한 규칙」제3조 제2항 제9호 규정을 적용합니다
- 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주택법」제5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제57조 등 관련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 청약순위와 무관하며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 27.) 현재 만19세 이상인 자[국내거주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와 법인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및 전산추첨: **청약접수 및 분양받을 자의 선정에 관한 업무를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여 전산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청약신청 방법: 청약접수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이며 자세한 설명은 사업주체 홈페이지인 장위아트포레(https://장위아트포레.com)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은 타입별 1인 1건 청약이 가능하며,** 각각의 타입별로 동일인이 2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가 무효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선정 및 호수 결정 : 당첨자 선정 및 호수 결정방법에 관한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신청 타입별 호수를 무작위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 예비당첨자는 900%로 선정하며,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 전화상담(02-966-0988) 및 견본주택 방문 고객상담 등은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 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자격사항 및 유의사항 등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신청 또는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 하여야 함.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되는 제세공과금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분양계약과 분양권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도 인지세 과세대상이며, 분양 계약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인지세법 등 관련법령의 인지세 가산세 개정(2021.01.01)으로 인지세를 미납부한 경우 계약일 경과에 따라 최고 30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분양 계약일 전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인지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인지세는 “시행수탁자”와 “매수인”이 연대하여 균등 납부합니다.
- 주택법에 의거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https://장위아트포레.com)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는 견본주택에 열람 가능토록 비치되어 있습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변경공고 승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도시정비신속추진단-7534(2024.09.12)]
- 공급대상물
 - 공급위치 : 서울시 성북구 석관동 338-18 일원
 - 공급규모 : 지하 4층 ~ 지상 15층 1개동 중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총191세대 중 5세대(잔여세대)
 - 대지면적 : 2,699.00㎡
 - 연면적 : 전체 건축물 연면적 17,034.79㎡
 - 본 건축물은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판매시설이 복합 계획됨.
 - 용도지역지구 등 :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
 - 주차대수 : 총 154대 중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109대
- 입주예정일 : 2025년 05월 예정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사업시행자겸 수탁자 : 교보자산신탁(주)
- 공동사업시행자겸 위탁자 : 새석관시장정비사업조합
- 시공사 : 희상건설(주)
- 분양대행사 : 미래와사람들
- 신탁업자겸 분양대금 관리자 : 교보자산신탁(주)
- 건축물 용도 :

구분	용도
지하 4층~지하1층	주차장, 기계전기실 등
지하 1층	판매시설, 주차장, 기계전기실 등
지상 1~2층	판매시설
지상 3층~15층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 세대)

타입 (약식표기)	주택형 (전용면적)	주택공급면적(m^2)			기타공용면적	주차장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세대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18BL	018.0700	018.0700	009.8900	027.9600	000.8700	014.2500	043.0800	005.4600	1
22GL	022.1900	022.1900	012.1400	034.3300	001.0700	017.5000	052.9000	006.4600	1
27CL	027.2000	027.2000	014.8900	042.0900	001.3100	021.4600	064.8600	008.2100	1
31EL	031.9900	031.9900	017.5000	049.4900	001.5500	025.2400	076.2800	009.6700	2
합계									5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전용면적)	018.0700	022.1900	027.2000	031.9900
타입 (약식표기)	18BL	22GL	27CL	31EL

- 당상품은 3~12F(복층형), 13~15F(단층형) 2가지 타입으로 구성되며 알파벳 'L'표기가 복층형을 표시합니다.(예시: 'BL' 복층형 세대, 'B' 단층형 세대)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적은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현되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 (주거 전용면적+주거 공용면적)에서 주거 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청약 신청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전용면적은 주택법에 따라 건축물 내벽의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시설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판매시설, 공공기여시설 각각의 연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각 세대 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였습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타입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공부상 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 면적과 등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진입통로, 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전기실 등)은 전체공용으로 하며, 각 세대별로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면적은 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 기준 면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공용면적입니다. 또한 그 밖의 공용면적은 공급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으로, 상기 계약면적에는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및 지하주차장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타입	주거 전용 면적(㎡)	호수	공급금액			계약금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합계	계약시 (10%) 2025.1.31	1차(10%) 2025.02.25	2차(10%) 2025.02.25	3차(10%) 2025.02.25	4차(10%) 2025.02.25	5차(10%) 2025.02.25	6차(10%) 2025.02.25	입주시
18BL	018.0700	310	85,950,000	139,050,000	225,000,000	22,500,000	22,500,000	22,500,000	22,500,000	22,500,000	22,500,000	22,500,000	67,500,000
22GL	022.1900	307	108,106,000	174,894,000	283,000,000	28,300,000	28,300,000	28,300,000	28,300,000	28,300,000	28,300,000	28,300,000	84,900,000
27CL	027.2000	301	115,364,000	186,636,000	302,000,000	30,200,000	30,200,000	30,200,000	30,200,000	30,200,000	30,200,000	30,200,000	90,600,000
31EL	031.9900	305	132,936,000	215,064,000	348,000,000	34,800,000	34,800,000	34,800,000	34,800,000	34,800,000	34,800,000	34,800,000	104,400,000
		406	136,374,000	220,626,000	357,000,000	35,700,000	35,700,000	35,700,000	35,700,000	35,700,000	35,700,000	35,700,000	107,100,000

- 본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상품입니다.
- 분양금액은 각 세대별 공히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구. 등록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본 주택의 공급대금에는 발코니 확장대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중도금 납부기간이 경과된 중도금 차수는 이월됩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공급금액은 사업주체 자체심의 결과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형별 면적, 층, 향, 구조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공동주택입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에어컨은 사업주체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며, 발코니 비확장으로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타입별 발코니 면적은 상이하며, 일부 타입의 경우 발코니 초과 면적이 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본 공동주택의 모든 주택형은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되었고 이에 따라 본 주택의 발코니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분양되며, 전세대 발코니확장을 일괄 시공하여 공급하므로 계약자는 개별적으로 발코니 미확장을 선택할 수 없사오니 청약 및 계약 전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사업주체에 대하여 발코니 미확장 또는 발코니 미확장에 따른 공사비 상당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건물의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함. 단, 단순착오에 의한 면적 정정이나 소수점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은 지정된 시점에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입주 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중도금에 대해서는 납부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각 층별 타입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호수배치도를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외관 색채 및 패턴, 부대시설 등의 기타시설은 경관심의 재심의 등을 통해 색상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020.10.27.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최초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자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권리를 사업관계자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냉방방식은 개별냉방방식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시공됩니다.
-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등)은 공용면적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세대별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 각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등 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세대별 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나 위치지정 및 구분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대지지분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계약 시 면적이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지적 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 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급금액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미 숙지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전자파, 전자기장애, 분진발생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사업부지 인근의 개발계획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그리고 정부정책 및 해사업주체업주체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도 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본불가)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별, 호별 구분없이 주택타입별 접수를 받고 추첨결과에 따라 각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Ⅱ 청약신청 및 유의사항

▣ 청약신청 자격 및 유의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 12.27.) 현재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본 공동주택은 주택공급 질서의 확립 및 혼잡을 방지하고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은 주택 타입별 1인 1건 청약** 가능합니다. 동일인이 동일타입에 2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처리 됩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한 인터넷 청약접수로하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청약이 불가합니다.
- 고령층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견본주택방문 시 청약신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릴예정이오니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는 계약이 취소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당첨자는 한국부동산원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신청 타입별 900%의 예비당첨자를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예비당첨자 소진 이후 미계약 물량 발생 시에는 사업주체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됨. 청약금 환불은 청약신청시 신청자가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됩니다.
 (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2.27.)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단,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업주체 대표번호(T.02-966-0988)로 전화 상담 또는 견본주택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일정 및 방법

구분	일정	장소
청약일	**2025년 1월 6일(월요일) ~ 2025년 1월 8일(수요일) (09:00~17:30)**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통한 인터넷청약**
당첨자발표일	2025년 01월 13일(월요일) 16:00 이후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통한 개별 확인
계약일	2025년 01월 24일(금요일) ~ 31일(금요일) (10:00~17:00)	견본주택 방문계약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36-2, 1층)

- 당첨자 및 호수는 한국부동산원 전산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결정되며 청약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청약신청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확인은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안내

이용안내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동인증서 or 금융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체 한도 확인)
방법 및 절차	① 접속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청약신청→'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청약신청하기 ② 청약 : 인증서 로그인 → 주택명 및 타입 선택 → 청약 신청 시 유의사항 확인 → 연락처 등(연락주소, 연락처) 입력 → 청약신청내역 확인 및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번호, 비밀번호 입력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완료 → 신청내역조회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합니다.(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접수 완료 기준은 17:30으로 청약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 시 청약신청이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은 PC[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및 스마트폰을 통해 청약 가능하며, 청약 전에 청약통장 취급은행(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또는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청약신청금 납부를 위해 1일(1회)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C 및 스마트폰 청약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위 모든 은행의 청약이 가능합니다.
- 법인은 인터넷 청약불가하며, 청약통장 취급은행의 지점 방문을 통한 청약만 가능합니다.
 [국민,신한,IBK기업,수협,농협,우리,KEB하나,아이엠뱅크,부산,광주,경남,SC제일,전북(제주,씨티는 지점 방문접수 불가)]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 (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도시형생활주택	O	O	O	O	O	O	O

• 본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청약홈에서 인터넷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단, 정확한 본인인증을 위하여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로 청약신청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약통장 미가입자는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로 청약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금 및 납부방법

구분	**청약신청금**	비고
모든 타입 공통	**1,000,000원 (금일백만원정)**	• 청약 신청 시 : 청약Home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한 인터넷 납부 • 주택청약 참가은행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씨티)에 입출금 통장 개설 후 청약신청금 이상을 예치하고 청약에 참가해야 함(인터넷 청약 시 거래은행 계좌에서 출금)

▣ 은행창구 접수 시 구비서류(청약통장 취급은행 전 지점)

<table>
<tr><th>구분</th><th colspan="3">구비사항</th></tr>
<tr><td rowspan="3">일반
공급</td><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청약신청서(청약통장 취급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청약신청금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청약신청자 명의)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td></tr>
<tr><td rowspan="2">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정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사실확인 방식</td></tr>
<tr><td colspan="2">-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도시형생활주택청약신청 위임용) 단, 재외통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r><td colspan="2">법인 신청 시</td><td colspan="2">• 청약신청서(청약통장 취급은행 지점 창구에 비치)
• 법인 인감 도장 및 법인 인감증명서 1통(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 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대표이사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td></tr>
</table>

국민, 신한, IBK기업, 수협, 농협, 우리, KEB하나, 아이엠뱅크, 부산, 광주, 경남, SC제일, 전북(제주, 씨티는 지점 방문접수 불가)
• 은행창구 청약접수는 상기 구비서류가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청약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구비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청약신청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아니하고 신청자가 기재(입력)한 내용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가 신청정보를 착오로 기재하여 당첨된 경우,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에게 있으며, 사업주체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추첨 및 당첨자발표

• 추첨: 한국부동산원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청약신청한 타입별 층·호수를 무작위로 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확인은 상기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시	당첨자 발표 장소
2025년 01월 13일 (월요일) (월요일 16:00 이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청약당첨조회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민간임대' 당첨조회 메뉴에서 조회일 기준 최근 5일 이내 당첨자 발표한 단지에 한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 스마트폰앱으로도 가능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당첨자 안내사항

당첨자 계약기간 준수	• 반드시 지정된 당첨자 계약기간 내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계약금 납부완료 및 계약 구비사항을 준비 후 계약장소를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호실 발생 시 관련 법령에 의거 잔여 호실에 대해서는 자격 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장소 미방문,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부정당첨 유의사항	•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할 수 있으며, 위약금을 공제함.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 타입별 900%의 예비당첨자를 한국부동산원에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정당계약 및 예비당첨자 소진 이후 미계약 호실 발생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에 따라 사업 주체가 수의계약으로 분양합니다. • 추첨을 통해 당첨된 청약자가 정당 계약체결 기간 내 체결하지 않을 경우 및 인터넷 청약 후 낙첨된 청약자는 사업자의 수의계약 공급 단계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수의계약 공급과 관련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방법

구 분	환불방법
환불 대상	• 당첨자(예비당첨자) 및 낙첨자를 포함하여 신청자 전원
환불 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일 익일 은행영업일에 청약자가 신청 시 입력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자동 환불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일괄 환불 되며 환불금액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Ⅲ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및 장소

계약체결 기간	계약체결 시간	장 소	계약금 납부
2025년 01월 24일(금요일) ~ 31일(금요일)	10:00 ~ 17:00	장위아트포레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6-2, 1층)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 계약금 납부

- 계약금은 분양대금납부계좌로 무통장입금(호수 및 계약자 성명 기재)하여야 하며, 입금 후 입금증을 지참하고 견본주택으로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서 미작성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없이 사업주체가 임의 분양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계약금	KB국민은행	095001-04-172795	교보자산신탁(주)	입금 시 호실과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 (예 : “901호” 당첨자 홍길동 → 901홍길동)
중도금/잔금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의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 납부 계좌로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납부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대상에 해당되지않음)
- 당첨된 호실을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 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가 납부지정일보다 늦을 경우 해당 연체일에 대한 연체료가 연체이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영업일 기준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은 총 공급금액의 60% 범위 내 무이자조건으로(중도금 1~6회차)에서 융자 알선을 시행 할 예정이고 나머지 공급금액은 현금 자납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무이자기간은 중도금 회차별 대출 개시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개시일 전일(前日)까지입니다.(단, 정부정책 및 금융권 사정 등의 사유로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대출 한도가 변경되거나 대출이 불가 한 경우에도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다주택자 및 다세대 계약자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전에 대출 금액 및 대출 가능 여부를 반드시 금융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의 특유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이 있게되거나 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대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일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은 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으나 대출 미신청자와 신용불량 등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납부일정에 맞춰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은 입주지정기일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잔금 중 50%는 입주일에,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 15일 이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금증은 영수증으로 간주되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등 어떠한 수납도 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서류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입금확인서류(무통장입금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1부(외국인/재외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용도: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계약용) / 외국인의 경우: 본국 대사/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서명증명서 •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서명으로 가능) ※ 외국인으로 계약체결을 위한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외국인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출입국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주민등록표초본 1부 : 거주자 우선공급 당첨자의 경우
법인 계약 시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계약금 입금확인서류(무통장 입금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1통(용도: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계약용)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 법인등기부 등본 1통 - 법인대표이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주민등록등본 1통 • 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제3자 대리 신청 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 존·비속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구비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계약 위임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 된 위임장1통(견본주택 내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인장

• 상기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10.11)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므로 용도를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에 준하는 법적 효력을 가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및 계약 취소는 물론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회사에서 임의 분양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주민등록증 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으로 당첨 및 계약 체결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계약 체결 후 부득이 해약하는 경우 공급계약서 계약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사업부지 인근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층,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사업부지, 평면도, 배치도 등을 통해 현황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사 기간 내 본 건축물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임의의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설계변경에 관해서는 사업 주체에게 위임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체결과 동시 상기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을 따릅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의 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등에 준합니다.

▣ 분양권 전매에 관한 사항
• 전매금지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계약자가 사업주체에 대한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 한하며, 분양권 양수인은 계약자의 본 공급계약 과정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또한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형사상,세무상, 기타 제반 법적문제에 대하여 계약자 및 분양권 양수인이 책임집니다.
(전매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및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음).
• 계약자는 분양권 전매 전까지 채무관계(미납대금,연체료 등)을 반드시 이행하여야하며, 해당 목적물에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 제한 채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 또는 소멸시켜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 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으로부터 위 표시 부동산을 대상으로 대출받은자는 전매 시 해당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 사업주체자간의 대출승계 증거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한 후 상환영수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 “입주자사전방문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개시 전 약 1~2개월전에 특정 일자를 통보하여 사전방문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통지는 예정일 10일 전까지 우편으로 하고, 입주자 사전방문 미참석자에 대한 별도의 사전방문은 없습니다.)

▣ 준공 및 입주예정일
• **준공 및 입주예정일 : 2025년 04월(준공예정), 2025년 05월(입주예정)**
• 준공 및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분양대금을 실입주지정일 전에 함께 납부하셔야 입주가 가능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또는 사업주체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문화재출토, 행정명령, 민원, 법원의 공사중지결정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이를 계약자에게 통보하기로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회사에서 선수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의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되는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 추가 유의사항
• **발코니확장, 시스템에어컨은 기본제공입니다.**
• 타입별 가구 표면 마감재가 상이함으로 해당 타입의 붙박이장 형태 및 표면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공사시 형태, 재질, 사양 등이 동급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보이지 않는 가구배면마감(천정, 벽, 바닥)의 경우 별도의 마감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가전품목 중 완제품으로 시공되는 제품의 하자는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하자 발생 시 제조사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 가전품목의 설치 위치는 주택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의 실외기실은 코어(실외기실)에 형성되어 있으며 세대별 개별 냉방방식으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의 에어컨 배관으로 인해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시운전을 위해 보양지가 제거되며, 입주 시 보양지가 제거된 상태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시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난방기능이 없으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달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부분의 외부 샤시는 단열성능 확보제품으로 설치되며 창호 및 유리(원자재 브랜드, 제조사)는 본 공사 시 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별도 고지는 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어 사실을 확인한 후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복층형) 2타입(BL,EL) 세대를 전시하였습니다.
- 사업주체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 무상품목 안내

무상옵션	
구분	품목
거실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전열교환기
	강마루
	발코니확장
주방	삼성 세탁건조기
	파세코 2구전기쿡탑(하이라이트)
	삼성 빌트인냉장고
방	시스템에어컨(EL타입,E타입,FL타입)
	드레스룸선반(EL타입,E타입,GL타입)
	강마루
화장실	세면대샤워기일체형수전(AL,A-1,A-2,A-3,A-4,A-5,CL,DL,D,FL,F-1,HL,H타입)
	아메리칸스탠다드 비데
복층(다락)	강마루

※알파벳 'L'표기가 복층형을 표시합니다.(예시: 'AL' 복층형 세대, 'A' 단층형 세대)

▣ 시스템 에어컨

구분	에어컨 설치 적용실(실내기)
EL,E,FL타입	거실+방(멀티형 13평형+5평형)
AL,A-1,A-2,A-3,A-4,A-5,B,BL,CL,DL,D,FL,F-1,HL,H타입	단층형거실(8평형)/ 복층형거실(10평형)

※알파벳 'L'표기가 복층형을 표시합니다.(예시: 'AL' 복층형 세대, 'A' 단층형 세대)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구분	항목	적용여부	항목	적용여부
의무사항 이행여부	고기밀 창호	적용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고효율 기자재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절수설비	적용

▣ **내진설계등급** : 중요도 및 중요도계수(제56조제2항관련 1) 및 건축물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규칙[별표11] 참조, 내진능력: VII-0.20g (MMI등급, 최대지반가속도=0.2g)

▣ 보증관련 유의사항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공동주택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82024-101-0005300호	이백이십사억사천사백팔십만원정 ₩22,444,80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 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사업주체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 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보상금.
1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3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 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 (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Ⅸ 유의사항

▣ 일반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제작 배포된 각종 홍보물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하거나 향후 변경 및 취소되는 등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방문 등을 통하여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환경, 개발계획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관련 팜플렛,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현황 및 기반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 상의 외부공간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업계획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도(공동주택 및 판매시설)에 표현된 외관 디자인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장 공사여건 등에 따라 입면디자인, 색채, 패턴, 줄눈, 몰딩, 옥상난간, CI, BI, 브랜드로고, 기타 장식물의 디자인 및 형태, 마감사양 일부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도의 주동의 구조물 디자인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도의 조경계획(식재, 포장, 조경, 공개공지, 보행자통로 등), 대지경계부의 조경석(옹벽) 및 난간 및 각종시설물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형도는 사진촬영이 금지되어 있으며, 법적 근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실대지 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단지배치, 단지 내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시 제시된 조감도, 세대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승인 또는 설계변경에 관한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 주택법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 부분 등에 대하여 행정관청 협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적 기준에 따라 층수가 산정되었습니다.
- 기타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은 전체 면적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였습니다.
- 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확정측량 등으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외부에서 내부로 진입하는 도로계획은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의합니다.
- 일부세대의 경우 고품질의 시공을 위해 견본세대(공사용)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세대는 사업주체에서 미계약 호실 또는 계약된 세대 중 사용허락을 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견본세대는 내부마감재 파손부위, 도배, 도장부위만 재시공 예정입니다.
- 입주 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입주후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 사무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동일지역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사업주체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조경과 당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 등의 변경이 계약 체결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 후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 견본주택

- **견본주택에 31EL 타입 발코니확장형(복층형) 유니트와 18BL 타입 발코니확장형(복층형) 유니트가 건립**되어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는 팜플릿 및 분양상담 등을 통해 차이점을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건립타입 내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쇼파, 아트월, 조경연출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시 제공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무상옵션품목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전 마감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되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건립타입은 동일타입이라도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될 수 있으니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미건립 타입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견본주택 건립타입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마감재의 종류는 동등 사양 내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E/V의 인승·속도·탑승위치 등)은 사업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손잡이 등) 및 계단 난간대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 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환기구(급/배기용), 유도등, 스프링쿨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관계법령 및 설계도면 기준에 맞추어 설치될 예정입니다. (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정,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기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분전반,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 월패드, 디지털도어락, 전열교환기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개선을 위해 제품사양, 위치,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 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입주자가 설치하고자 하는 가전품목(냉장고, 세탁기 등)의 사이즈에 따라 일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상의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층형 실내천장고는 거실바닥면부터 천장지마감까지 2400mm, 복층형 실내천장고는 거실바닥면부터 천장지마감까지 3100mm(복층다락의 바닥면에서 천장지마감까지 1180mm)이나 실제 시공상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초과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2006.1.23.)」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 발코니 및 욕실, 주방의 경우는 상부층 세대 배관점검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하부측 세대에서 천장배관을 점검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벽)으로 시공될 수 있어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외부창호의 제조사, 크기 및 두께, 재질, 색상, 디자인, 하드웨어, 유리사양, 개폐방향, 설치위치 등은 구조 검토 결과 또는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카탈로그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 벽체 길이, 하부턱 등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욕실의 사이즈가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저층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천장, 벽체, 바닥)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예, 욕실장 후면 타일 미 시공, 붙박이장, 신발장 및 주방가구 천장/후면/측면 마감재 미시공 등)
- 세대 내 사용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 불가, 단종 품질 확보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 제품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재 내용은 주택형별, 확장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 금속도어(현관방화문, 대피공간도어)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현관바닥, 욕실, 주방수납장바닥, 다용도실바닥 등의 타일 나누기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욕실, 발코니 바닥은 물흐름 구배로 인하여 턱 높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전 평형 욕실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확장으로 실내외 온도차이 및 생활여건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기적 실내환기,환기설비가동은 동절기 결로발생 예방에 도움이 됨)
- 발코니 외벽은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창호의 턱높이, 색상, 사이즈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창호(그릴창 포함) 및 난간의 재질 및 사양, 디자인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변형 구조 변경시 설비기구 및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실제 시공 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분전반 및 통신 단자함은 타입별 설치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유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세대 내로 전달될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천장형전열교환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열교환기 및 연결 덕트가 천장에 노출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층형 다락 관련사항

- 다락은 별도의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않으며, 입주자의 임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다락부분 바닥난방 설치 등 임의 변경시 건축법에 위반되어 행정처분 대상임)
- 다락은 타입, 호 위치에 따라 난간 등으로 인하여 조망권 등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시 견본주택 및 모형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다락에는 주방/화장실 등 흡출기가 인접하여 설치되어 있어 날씨 및 주변 환경에 따라 소음 및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락 공간에는 수전 및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다락에는 각종 설비 배관덕트(DUCT)가 존재하며 일부 타입(AL,BL,CL,DL,FL,HL)의 천장에는 윗집세대의 배관매립으로 바닥 하부방향으로 배관박스가 돌출됨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여야합니다.
- 다락의 바닥마감은 강마루로 시공됩니다.
- 본 공동주택의 외부 테라스공간은 공용공간이나 실제에 있어서는 해당세대가 전유부분처럼 사용하게 됨으로 다른 세대의 진입은 불가능하나, 공용설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진입 요구시 반드시 개방하여야 하며,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하므로 계약시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외부 테라스가 있는 일부 세대는 해당 입주자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시공되며 이에 대해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한 후 청약을 하고 계약을 체결함을 인정하므로 여타 세대는 해당 세대가 테라스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여야 하며, 사용중지의 요구·공동사용 및 철거 요청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 옥상에는 정화조 배기덕트, 보일러 중앙연도가 설치되어 있어 날씨 및 주변 환경에 따라 소음 및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외관, 옥탑 디자인, 외부조명시설, 동출입구, 외부난간의 형태 및 높이, 단지조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협의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대지 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단지배치, 단지내도로 선형, 조경(수목,수경,시설물,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의 위치, 주출입구, 조경 및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건축물의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변경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동 저층부 마감은 지상 1~2층 석재이며, 상세계획에 따라 미관 개선 등의 이유로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 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본 단지는 배치상 인접건물 및 호실에 의해 각 호실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 및 사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내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비상차로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호실에는 차량 소음,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건축 입면의 미관을 고려하여 가스배관 입상과 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차량출입구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차량의 운행에 따른 소음 및 차량조명, 차량 진출입에 따른 출차 주의 등에 의한 경보음으로 인해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계획은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 및 기계/전기실은 설계변경을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입면형태, 색채, 재질, 간판형태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탑라이트)이 노출되어 소음 및 시선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동 입면 하단부 석재마감 및 석재마감 상단 몰딩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 비상차로 접근이 어려운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 배치 특성상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 수목 등으로 일조 및 조망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당 아파트 배치구조, 동·호수별 위치, 인근 아파트 단지에 따라 일조·조망·소음·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체결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동 형태로 인한 요철, 입면, 마감재 및 장식물, 외부승강기 및 계단실, 지하층 환기용 급배기구,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인하여 일조, 조망,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위치에 따라 일부 세대는 냄새, 해충 등에 의한 생활 환경상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기타 기능상 또는 인허가청 요청에 따라 추가 시설물(도시가스 정압기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소방 안전매트 설치 및 소방차 점유공간을 고려한 소방심의에 따라, 주거동 하부 녹지대의 식재계획이 배제되어 저층부 호실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경관적 호불호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민원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 주차장은 공동주택 총 109대로 계획되며, 기타 인허가 및 각종 평가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내 내부시설물(운동기구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계단실, 엘리베이터홀이 연결되는 통합형입니다.
- 주차장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단지 계획에 따라 인근 주차대수 및 출입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공용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지하층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어 빗물유입, 청소 등으로 인해 트렌치 바닥에 물 고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휀룸이 설치되며 휀룸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어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동 내에 드라이에어리어 환기구, 지하주차장 휀룸 환기구, 기타 지상 돌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외관 디자인 계획에 의해 일부 세대의 발코니 외측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입면 몰딩 등의 설치에 따라 층별, 호별 입면의 돌출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명칭 및 색채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 모집 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분리수거대 및 재활용품 보관소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산정 후 설치될 예정이고 특히 쓰레기분리수거대는 지하3층에 설치되며, 주변으로 냄새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시 이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치변경 요청은 수용이 불가합니다.
-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쓰레기 집하장 등의 공용 설비로 인해 냄새, 소음 및 진동, 해충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저층부는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고 가로등 및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실 및 발전기실 등에 인접한 세대는 발전기 비상가동 및 주기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가동으로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하고 배기가스가 외부로 배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니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붕 및 옥탑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경관조명, 공용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태양광설비,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 기타 등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야외 조경용 조명 및 공용부위 조명 등에 의하여 일부 세대는 눈부심이 발생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택배함의 설치 위치는 단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한국전력 전기공급약관에 의거하여 부지 내 개폐기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공용부위 조명,보안등, 조경용 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실외기실은 각 층마다 코어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인접한 세대에서는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 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차로폭(연석포함)은 6.0M(진입 1차선, 진출 1차선 총 2차선)이고, 지하주차장 차로폭은 6.0M입니다. 지하주차장 유효높이 2.3m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보다 높은 차량은 진입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외부여건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개발(도로, 공원 등 기부채납 시설 포함)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향후 주변단지의 신축, 개축 등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가 인접하여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진동, 주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을 수 있음을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은 데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단지 외부여건을 확인하신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 건물로 인하여 일부세대가 조망이 방해될 수 있습니다.
- 향후 주변시설과 당 아파트 배치구조 또는 동・호수별 위치, 단지 내 도로 및 인근 아파트 단지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비산먼지, 혐오시설 존재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사업부지 현장 인근 방문을 통하여 주변시설 확인 및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견본주택, 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에 전시품 등이 같이 표현되어 있으나 본 공사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견본주택, 팜플렛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벽지 및 벽타일, 인조대리석 등은 실제 시공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 시설물의 위치조정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의 상이할 수 있으며,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의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며,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벽걸이 TV 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세대 내 현관, 거실, 주방, 침실 등에 분전함 및 통신 단자함이 설치되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의 자연환기량 감소, 습도 증가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등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 상·하부 및 붙박이장 뒷벽 등에는 마감재(마루, 도배, 타일 등)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개수대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 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 바닥 마감재는 시공되지 않으며, 난방분배기 등이 설치되기 때문에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상부장이 가스배관 또는 렌지후드 배기덕트와 겹치는 일부 타입의 경우, 상부장이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천정에서 이격되어 설치됩니다.
- 과대한 가전제품(냉장고 등)의 경우 세대 내 설치위치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하자담보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

-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의 판정은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콘크리트의 폭 0.3mm이하의 미세한 균열은 공사상의 하자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하자보수 절차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하자 판정 기준 도면은 사용검사(사용승인)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문주,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계획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에 의한 경미한 변경사항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관련기관에 경미한 변경 처리로 진행합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천재지변, 공사여건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할 예정입니다.
- 아파트 준공 후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소음 측정하여 소음기준을 초과할 경우 아파트 부지 내 방음시설이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차입형 토지신탁

- 위 분양 건축물의 신축 및 분양사업은 “새석관시장정비사업조합”이 “교보자산신탁(주)”에게 사업부지 및 시행을 신탁하여 진행하는 차입형토지신탁사업으로, 실질적인 분양사업자는 “새석관시장정비사업조합”임을 “계약자”는 인지합니다.
- 본 계약의 각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보자산신탁(주)”는 관련 법률 및 본 분양계약상 매도인의 제반 의무(분양대금 반환, 지체상금 배상, 하자보수책임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를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부담하며, 이를 넘는 책임은 “새석관시장정비사업조합”이 부담합니다.
- “새석관시장정비사업조합”의 신탁계약상 위탁자의 지위가 양도되는 경우 “계약자”는 그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에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계약자”에게 위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과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중 빠른 시점에, 본 계약상 매도인의 지위 및 수탁자가 부담하는 제반 권리의무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새석관시장정비사업조합(지위의 승계가 있을 경우 그 승계인)”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되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합니다.
-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금융기관 대출금 상환, 기타 사업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설계 기준 및 성능 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성능,설치위치,설치개수(필요시)
기계부문 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따름 *설계기준 실외 (-11.3℃), 실내 (거실20℃/ 주방20℃)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따름
	고효율 전동기(라목)	○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를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	공용화장실 없음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감 리 회 사	감 리 금 액	비고
건 축	㈜나임ENG종합건축사사무소	616,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전 기		139,480,000	
통 신 / 소 방		209,220,000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시행사 및 시공회사

공동사업시행자겸 위탁자	**공동사업시행자겸 수탁자**	시공사
새석관시장정비사업조합 / 조합장 이 제 혁	**교보자산신탁 ㈜ / 대표이사 강 영 욱**	희상건설 ㈜ / 대표이사 이 경 범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78, 2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465,8층(서초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 36(방배동)
법인등록번호 110111-4888826	**법인등록번호 110111-1617434**	법인등록번호 135111-0064752

▣ 분양문의 : 02-966-0988 / 사이버 견본주택: https://장위아트포레.com
▣ 견본주택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6-2, 1층 장위아트포레 견본주택
▣ 견본주택 약도

약도



| **홍보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동 36-2 1층
| **현 장**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338-18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하며,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의합니다.)